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26.(금) 10:00

본회의장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심사보고서

【 심사안건 】

1. 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 ----- 1
2. 시니어클럽 추가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 12



행정경제위원회

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 2024년 7월 11일
- 나. 제안자 : 오승경 의원
- 다. 회부일자 : 2024년 7월 12일
- 라. 상정일자 : 제2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2024년 7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제안설명자 : 오승경 의원)

- 향교·서원은 선현의 덕을 기리는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 시설로, 김제시의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서원의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8조)
- 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2조)
- 시행규칙 사항 (안 제13조)
- 공사실명제(안 제15조)
- 시행규칙(안 제16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유 석)

- 본 조례안은 선현의 덕을 기리는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 시설인 김제시의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서원의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 진흥 및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을 근거로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본 조례안 제정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조례안 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국가 또는 도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 김제시에서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향교 및 서원으로 한정하여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지만 문중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타 서원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음을 명확히 하면서도, 광의의 국가유산 개념을 적용하여 향토유산(지방문화재)인 백석서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범위를 확대하여 가치있는 지역 유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2024년 6월 24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 ①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 서원들은 주민들이 이용을 원할 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는 등 공공성 확대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당부가 있었음.
 - ② 협의체의 설치와 관련하여,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그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음.
 - ③ 기존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향교·서원 뿐 아니라 보존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서원들의 지방문화재 추가 지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 전북특자도내에서는 도, 남원, 완주, 진안, 장수 등 총 5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이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에서 추진해온 기존 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향교·서원전통문화 활성화 및 계승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표 1》 전북특자도내 향교·서원 등 지원사업 현황('24 본예산기준)

구분	예산액(천원)	사업내용	비고
전북특자도	395,850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김제시	76,590	향교 일요학교 운영, 기로연 지원, 석전대제 제기·제복 등 지원 제례실행사업비 지원	향교 4개소 서원 2개소
남원시	103,200	석전대제 등 제례지원 전통예절학당, 충효교실 운영	향교 2개소
완주군	37,700	유림지도자 양성교육 명륜학당, 토요학교 운영 분향례 실행, 제례실행보조	고산향교
진안군	108,200	향교 청소년 인성교육, 전통문화시연, 고전연수강좌운영 제례실행비 및 제례비 지원	향교 2개소 서원, 사우 등 15개소
장수군	142,100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석전대제·기로연 지원, 서원·영당 제례비 지원, 성균관 봉심 지원 등	향교 1개소 서원, 영당 등 7개소

- 다만, 안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의 지원신청서 및 제7조(결과 보고)의 결과보고서와 관련한 별지 서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행규칙 등에 서식마련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 없음.

5. 질의 및 답변 요지

- 교육청,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향교, 서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람들의 주기적인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의 모색 및 지역의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노력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음.
-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향교·서원행사에 반영하고 예산 투입 후 추진결과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보고에서 언급된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와 제7조(결과보고) 관련 별지서식을 시행규칙에 마련하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음.

6. 토론 요지

- 특기할 만한 사항 없음

7. 심사 결과

-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 참석위원 :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8. 참고자료

- 김제시 향교 및 서원현황
- 상정 조례안
- 관련법령

[참고]

김제시 향교 및 서원 현황

	종목	명칭	소재지	관리자
향교	사적	김제군 관아와 향교 (金堤郡 官衙와 鄉校)	전북 김제시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김제향교대성전 (金堤鄉校大成殿)	전북 김제시	김제향교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금구향교대성전 (金溝鄉校大成殿)	전북 김제시	금구향교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만경향교대성전 (萬頃鄉校大成殿)	전북 김제시	만경향교
서원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백산서원(白山書院)	전북 김제시	파평윤씨 문중
	김제시 향토유산	백석서원(白石書院)	전북 김제시	문화류씨 문중

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서원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김제시 (이하 “시”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 중기 이후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김제시에 현재까지 보존 복원한 국가유산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와 서원 문화 행사 사업
3. 향교와 서원에서 진행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 예절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향교·서원으로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으로 한정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 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신청한 사업의 적정성
2. 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미치는 영향
3. 비용 사용의 투명성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 ①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 성과 및 평가
3. 현장 사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김제시 향교·서원전통문화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단체의 대표자

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제시의회의원
2. 김제시의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단체 대표자
4.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

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 협의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④ 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니어클럽 추가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 2024년 7월 11일
- 나. 제안자 : 김제시장
- 다. 회부일자 : 2024년 7월 12일
- 라. 상정일자 : 제2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2024년 7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제안설명자 : 소은경 과장)

- 김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의 추가 운영이 필요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000시니어클럽 관리 운영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제45조의제2항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위탁시설 개요

시설종류	시설명	시설장소	종사자(명)	운영예정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000시니어클럽 (지정시 결정)	미정	6 (시설장1, 부장1, 직원4)	2024. 10.

○ 위탁사무 내용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 운영 전반
-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보급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그 밖의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소요예산

- 운영비(82,500천원) + 처우개선비(2,160천원) = 84,660천원
- ※ 당해연도 예산액 기준(10~12월 3개월간, 시비 100%)
- 익년 도비 보조예정(추가소요예산 발생 시 운영기관에서 자부담)

○ 수탁자 선정방식

- 수탁자 선정 : 공개 모집 후 심사·선정
- ※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 기간 :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2024. 10월 예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유 석)

-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제45조의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4 및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니어클럽 추가운영에 따른 노인일자리 관련 관리업무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 지역 특성 및 참여자의 역량에 기반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관(시니어클럽) 1개소의 추가설치 추진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전반을 위탁하여 전문적,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표 1》과 같이 전북특자도 내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매년 증가해오고 있으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으로, 이에 우리 시

에서도 증가하는 사회서비스·민간형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와 관련 사업의 전문화·고도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추가 설치에 타당성이 있다 할 것임.

《표 1》 전북특자도 연도별 노인일자리 사업량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량(명)	54,870	61,797	65,422	68,901	78,841

- 현재 김제시는 시니어클럽 1개를 포함하여 9개소의 수행기관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4년 기준 예산액 260억, 사업량 6,714명으로 매년 예산액과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익형 노인일자리 위주의 사업구성(77%), 전담인력 확보문제 등 기존 기관이 갖는 한계로 인해 급격한 사업량의 증가와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유형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표 2》 김제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별 사업현황

(단위: 명, 천원)

기관명	대표자	2024년		2023년 사업량	사업량 증 감	비고
		사업량	예산			
9개 기관	총계	6,714		26,056,420	6,158	'23 예산대비 (21,409,391) △4,647,029
		일자리	전담 인력			
김제시니어클럽	천경희	2,472	21	9,205,840	2,554	▽61
대한노인회김제시지회	이종선	1,115	8	4,080,620	737	△386
김제노인종합복지관	노기보	667	5	2,486,370	571	△101
김제노인복지센터	박경란	537	5	2,935,520	511	△31
김제제일사회복지관	안정한	310	2	1,292,338	292	△20
성암노인복지센터	이춘자	309	2	1,676,112	335	▽24
김제사회복지관	정 훈	250	2	901,660	145	△107
길보른사회복지관	권영세	172	1	609,220	150	△23
김제문화원	김선유	148	1	528,340	139	△10
읍면동(19)		686	1	2,340,400	724	▽37

** (유형별) 공익형 5,175 / 사회서비스형 590 / 시장형 821 / 취업알선형 80 / 담당자 48

○ 2024년 6월 24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 ① 연간 260억원에 달하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 수행하는 기관의 추가 설치에 관한 사항만큼 지정 과정에서 심사 숙고해야하며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하고, 운영 시에도 본연의 전담업무에 집중하여 제대로된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기능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한다는 당부가 있었음.
- ② 기존 월 27만원 임금의 공익형 일자리 위주 사업구조에서 탈피하여 베이비붐세대 전기고령층들의 진입으로 다양한 역량과 생산성을 갖춘 노인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참여자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추가 설치되는 시니어클럽의 주요 역할을 강조하며 공정성도 확보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음.
- ③ 전문성이 없는 기존 수행기관의 사업배분 및 읍면동 사업량과 관련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추가설치된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참여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 관계적 효과와 더불어 ‘노년기 자아실현’을 위한 고도화된 사업 개발 및 재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제출된 동의안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단순히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사무위탁에 그치지 않고 노인일자리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관리 및 관련사업의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속칭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의 건입에도 불구하고 시설명, 장소 등이 미정된 상태로 제출되어 시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관의 구체적인 실체가 부존재한 상황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얻기 위한 기관의 구체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 단계에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먼저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전후관계가 뒤바뀐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전담기관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근로 복지사업 추진기관이 어르신들에게 끼칠 수 있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몇 개의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독점되어 권력화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음.
- 도비 보조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칭비율이 10%로 매우 낮으므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노인일자리 확대 정부기조변화에 발맞춰 도에 도비 매칭비율 증가를 건의해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음.
- 민간위탁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나 단점을 고려해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공적 기관의 형태로 별도 조직을 만들어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음.
-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대로 기관의 제명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위탁 동의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 (소은경 과장) ‘지평선’, ‘새만금’ 등 김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시설명을 검토하였고 최종 ‘지평선시니어클럽’으로 결재 진행중인 상태로서 시설명을 명확히 결정하여 모집공고 진행할 예정임.

6. 토론 요지

- 시설명칭 부재로 인한 안전형식 요건미비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대로 시설이 하반기 운영을 앞두고 있고 시설명칭이 최종 확정 대기중인 상태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금번에는 승인처리를 하도록 하지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조건부 승인토록 함.
 - ☞ ① 수탁자 모집공고시에 시설명을 명확히 하여 진행할 것.
 - ② 추후 집행부에서 기관의 구체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을 제출하는 등 유사사례 발생할 경우 부결처리예정(재발방지 요구)

7. 심사 결과

-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참석위원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 참석위원 : 문순자, 최승선, 주상현, 이정자, 김영자

8. 당부사항

- 본 동의안의 시의성과 필요성을 공감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으나, 시설 명조차 미결정 상태인 구체적인 실체가 부존재한 기관에 대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안전형식 미비의 사례이므로 재발 방지를 요구함.

9. 참고자료

- 상정 동의안
- 관련법령

시니어클럽 추가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김제시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 필요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을 추가 설치하여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바 김제시의회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민간위탁 실시

▶ 사유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등

2. 위탁시설 개요

시설종류	시설명	시설장소	종사자(명)	운영예정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000시니어클럽	미정	6 (시설장1, 부장1, 직원4)	2024. 10.

3. 위탁기간 :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 (2024년 10월 예정)

4.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 제45조의제2항(비용의 부담)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 「김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 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위탁대상

-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위탁사무명 : 000시니어클럽 관리 운영

5. 수탁자 선정방식

- 수탁자 선정 :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6. 향후 추진 일정

- 시니어클럽 운영 예산 확보 ----- 2회 추경 시
- 시니어클럽 운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 24. 9월
- 시니어클럽 운영기관 지정 의뢰(도) ----- 24. 9월
-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약 체결 ----- 24. 9월
- 시니어클럽 운영 ----- 24. 10월
- 2025년 시니어클럽 운영 소요예산 협의(도) ----- 24. 10월

□ 관련법령 발췌서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 4. 7.>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 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4. 7.>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7.>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6. 4.>

[본조신설 2005. 7. 13.]

○ 「노인복지법」 제45조의제2항(비용의 부담)

제45조(비용의 부담) ① 삭제 <2007. 4. 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 7. 13., 2011. 4. 7.>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1.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④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본조신설 2005. 12. 27.]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본조신설 2005. 12. 27.]

○ 「김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김제시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